



남동구 보건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의무기관 결핵검진등 안내

1. 관련문서

- 가.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결핵검진등에 관한 사항"
- 나. 같은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16조 "과태료에 관한 사항"
- 다.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1059(2024.8.9.)호
- 라. 시 감염병관리과-3739(2024.3.8.)호

2.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의무기관·학교의 장*은 종사자·교직원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검진의무기관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④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②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	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③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⑥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⑦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학교 등

3. 이에,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 실시의무가 있는 기관·학교 등에서는 종사자·교직원이 결핵검진등을 실시하도록 적극 안내·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남동구보건소장

수신자 관내 의료기관, 건강증진과장, 남동구청장(보육정책과장),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인천광역시교육감, 남동구청장(아동복지과장)



주무관

장한아

질병관리담당

장명선

보건행정과장

전결 2024. 3. 8.

김혜영

협조자

시행 보건행정과-5134

(2024. 3. 8.)

접수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 <http://www.namdong.go.kr>

전화번호 032-453-8432

팩스번호 032-453-5079

/ jha905@korea.kr

/ 대한민국 공개

내 개인정보는 철저히 지키GO! 타인의 개인정보는 소중히 잠그GO!